포항상공회의소

㉾377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(상도동)
전화 : 054-274-2233 / 팩스 : 054-283-1823 / e-mail : kek@korcham.net / 기획관리팀 / 김응기

기획관리팀 : 제041호 2021. 03. 05

수 신 : 회원업체 대표

참 조 :

제 목 : **포항상공회의소 회원업체 2021년 회원대장 제출 협조**

---

1. 귀하의 건승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.

2.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거 설립된 법정 민간경제단체로서 회원기업의 권익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상공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세제·노사·통상·환경 등 경영여건과 관련된 법·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·개선하고 있습니다.

3. 이에 상공회의소 법 제17조(회원대장 작성·관리)에 의거 회원사의 기업정보를 매년 갱신하여 보다 정확히 상의 서비스를 안내·제공해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회원대장 작성·제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- 아 래 -

가. 관련법규 : 상공회의소법 제17조 "회원대장" 작성·비치 관리

나. **요청자료**
① **회원대장 1부**
② **2020년 1기·2기 예정·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.**

다. 협조기한 : 2021. 3. 17(수)까지

라. 제출방법 : 해당 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제 출 처 : 포항상공회의소 기획관리팀
- 주 소 : (㉾37783)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33
- 팩 스 : 054-283-1823
- 이메일 : pohang@korcham.net
- 문의처 : 기획관리팀(054-274-2233)

※ 첨 부 : 회원대장 및 상공회의소 법 안내 각 1부. 끝.

포항상공회의소 회장 김재동

회 원 대 장

(※상공회의소법 제17조에 의한 관리 의무)

☐ **일 반 현 황** (포항사업장(영덕·울진·울릉 포함) 기준)

회 사 명		법인등록번호	
사업자등록번호		본사 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자 성명		대표자 직위	
사업장 구분	본사( ) 공장( ) 지점( ) 기타( )		
주 소			
전화번호		팩스번호	
e-mail		상시종업원수	명
기 업 규 모	대 기 업( ) 중견기업( ) 중소기업( )	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여부	가 입( ) 미가입( )
사업자단위과세제도 시행여부/시행일자	• 시 행( ) 시행일자 : 년 월 일 • 미시행( )		

☐ **매 출 현 황** (부가가치세 신고서 기준)

구 분	과세매출	영세매출	면세매출	합 계
상 반 기 (2020.1.01~06.30)	원	원	원	원
하 반 기 (2020.7.01~12.31)	원	원	원	원

※ 전국사업장이 아닌 포항상의 관할구역내(포항/영덕/울진/울릉) 사업장 매출액만 기재.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작성.
※ 제출서류 :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21, 서식34, 또는 서식28
1) 일반사업자 : 서식21(개정前 서식 12) 2) 사업자단위과세업체 : 서식28(개정前 서식 17의3) 3) 총괄납부업체 : 서식34(개정前 서식 12의2)

☐ **작 성 자**

성 명		부서 / 직위	/

[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]

포항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사업 및 회원서비스 내용 등을 전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합니다.

수집목적	수집항목	보유기간	수집근거	동의여부(필수)
상공회의소 사업 및 회원서비스 안내	성명, 부서, 직위, 전화번호, 팩스번호, 이메일	수집일로부터 2년	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	( )

※ 귀하는 상공회의소의 사업 및 회원서비스 안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할 수 있으며, 만약 동의를 거부할 경우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[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동의]

수집목적	수집항목	보유기간	동의여부(필수)
상공회의소 사업 및 회원서비스 안내	팩스번호, 이메일	수집일로부터 2년	( )

※ 귀하는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내용에 동의할 수 있으며, 만약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련 행사 및 교육 안내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성 명 : _____ (서명)

※ 문 의 처 : 기획관리팀 (TEL:274-2233, FAX:283-1823, 이메일:pohang@korcham.net)

상기와 같이 회원대장을 제출합니다.

2021. . .

포항상공회의소

상공회의소 법령 안내

1 상공회의소는?

상공회의소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 상공회의소법에 의거, 기업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.

포항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(포항시·영덕군·울진군·울릉군)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,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·사회적 지위를 높이며, 당면한 경제적 현안을 해결하는 등 지역 상공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2 상공회의소법 주요내용

제10조(회원)

① 상공업(「소득세법」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을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)을 영위하는 자(이하 "상공업자"라 한다)는 그 영업소,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
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7조에 따른 매출세액[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에 따라 영세율(零稅率)이 적용되거나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 합산한다]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상공업자는 당연히 회원이 된다.

> ※ 시행령 제11조(당연회원의 기준)
>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**당연회원이 되는 매출세액의 기준**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> 1. 특별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17억원
> 2. 광역시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5억원
> 3. 특별자치도 · **시 ·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에 소재하는 상공업자 : 2억 5천만원**

제13조(회원 등의 권리)

①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 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22조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
제14조(회원 등의 의무)

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회원과 특별회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.

3 회원자격 및 회원회비

회원자격

포항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운영되는 법정 민간경제단체로서 반년 매출액이 25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법적으로 상공회의소 회원이 됩니다.

회원회비

→ 매출세액(과세 · 영세 · 면세금액 합산 매출액 × 10%) × 2.2/1,000(정부인가 회비부과율)
→ 회비산출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누진체감공제 적용
→ 회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 10% 공제
→ 상공회의소 회비는 손비 및 필요경비로 100% 인정(손금산입,세금감면 혜택)
(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)
→ 입금계좌 : 대구은행 505-10-224128-2 (포항상공회의소)

4 회원대장

제17조(회원대장)

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(臺帳)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. 다만,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·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